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11일, 서범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서범수)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 폐지

‘봉인’이란 건설기계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위조 내지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2년 (舊)「중기관리법」 제8조 및 제34조에 신설되어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음.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표에도 시행하던 제도로, 1962년에 자동차 등록번호표 도난이나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차량 관련 범죄를 줄이고 등록된 차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으나, IT기술의 발달로 CCTV와 차량인식기술을 통해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잡으면서, 2025.2.21. 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음.

등록번호표의 실시간 확인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경우와 같이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나.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제 재검토 폐지

현행법 제39조의4는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와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현행법 제39조의4)은 2016.1.19.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

이후 세 차례의 규제 재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2024년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공해·소음 저감, 자가정비를 통한 부담 완화 및 자가정비 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유사 입법례로서 「자동차관리법」도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가정비와 검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사 결과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의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복적인 규제 타당성 재검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 등록관청의 압류등록 근거 마련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채무 상환 또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는 건설기계도 해당되며,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은 법원 또는 행정관청 등이 건설기계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시·도지사에게 압류등록을 할 것을 촉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선박법」은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압류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및 선박에 대하여 각 시·도지사 또는 소형선박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원 또는 행정관청 등의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촉탁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압류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압류와 관련된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범수의원(2건)과 윤재옥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네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